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424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4월 3일
발 의 자 : 이영실, 전석기, 최웅식,
정진술, 김혜련, 박기열,
김용연, 홍성룡, 김동식,
김희걸, 이정인, 김평남,
김화숙, 김태수, 문장길,
이병도, 박기재 의원(17명)

1. 제안이유

- 독거노인, 저소득자, 장애인, 어린이 등의 경우 재난 및 각종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어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며 이들에게 재난 및 사고대비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생명·신체 및 재산보호에 이바지하고 있음.
- 그러나 해당 조례상 안전취약계층 대상이 일치되어 있지 않기에, 조례에 대한 시민 신뢰 등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2. 주요내용

- 가.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제12호)
- 나. “저소득층, 노약자,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”을 “안전취약계층”으로 변경함(안 제57조제1항~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2. “안전취약계층”이란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

가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

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
다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라. 13세 미만의 어린이

마.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57조제1항 중 “저소득층, 노약자,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”을 “안전취약계층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”을 “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”을 “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11. (생략)</p> <p>12. <u>“안전취약계층”이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<u>“안전취약계층”이란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<u>노인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<u>장애인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다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<u>수급자 및 차상위계층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라. <u>13세 미만의 어린이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마. <u>그 밖에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u></p>
<p>제57조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<u>저소득층, 노약자,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시장은 <u>제1항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</u></p>	<p>제57조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 ----- <u>안전취약계층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</u>----- -----</p>

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의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생활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----.

③ -----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-----

-----.